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2017. 7



본 공개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대해 CPMI-IOSCO*가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원칙」(PFMI ;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과 「PFMI 정보공개 체계 및 평가방법」(PFMIs Disclosur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y)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CPMI: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IOSCO: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금융시장인프라 명칭: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

운영기관: 한국은행(Bank of Korea)

사법권역: 대한민국

공개일시: 2017. 7. 28.

홈페이지 주소: www.bok.or.kr

문의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bokdpmp@bok.or.kr)

< 차례 >

I. 개요	1
II. 주요 변경사항	2
III. FMI 일반정보	2
1. 한은금융망 개요	2
2. 조직 및 지배구조	4
3. 법적·규제적 체계	4
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5
IV. PFMI 원칙별 설명	7
V. 참고자료	27

I. 개요

1. FMI 개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들의 콜거래 등 단기금융시장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및 외환매매거래에 따른 원화자금결제 등을 수행한다.

2. 참가자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한은금융망 담당 전문인력수, 예상 이용건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입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매년 참가기관이 가입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 충족방안의 준수 요구,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관련약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2016년말 현재 132개 기관(은행 59개, 비은행 73개)이다.

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81조 및 제84조)에 근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주된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관행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시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리스크를 축소시켰다. 2006년 4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은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한도내에서 즉시 자동으로 대출을 실시하여 일중 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예금지급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 한해 지원되며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새로운 한은금융망 가동으로 유동성 절약기능이 추가되어 유동성리스크가 대폭 감축되었다.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의 추가로 참가기관들이 보다 적은 유동성으로 일중 결제를 완료시킬 수 있어 결제지연이나 결제교착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도 크게 감소되었다.

II. 주요 변경사항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른 첫 번째 공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FMI 일반정보

1. 한은금융망 개요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소유·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 계정을 통한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s. Pay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CLS시스템(Continuous Linked Settlement System)과의 연계를 통해 외환매매대금의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s. Payment)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절약형 결제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 동향

한은금융망은 거액자금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간 콜자금 및 증권·외환매매자금의 이체, 일반 고객의 거액자금 이체,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국고금수급 등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자금이체를 처리한다. 2016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이체는 일평균 299.8조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건수 기준으로는 일평균 1만 5,349건이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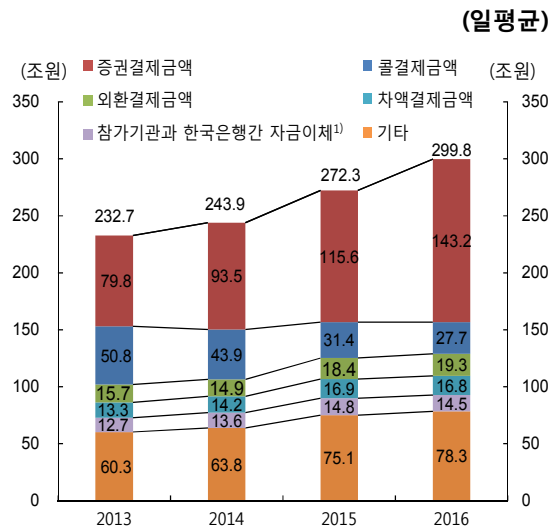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일평균)

(조원, 전년대비 %)

	2014	2015	2016	
			연간	증감률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230.3	257.4	285.2	(10.8)
(콜자금)	43.9	31.4	27.7	(-11.8)
(증권자금)	93.5	115.6	143.2	(23.9)
(외환자금)	14.9	18.4	19.3	(4.7)
(고객자금) ¹⁾	35.1	41.5	37.1	(-10.7)
(차액자금) ²⁾	14.2	16.9	16.8	(-0.5)
참가기관-한국은행간 자금이체 ³⁾	13.6	14.8	14.5	(-1.9)
원화자금이체 합계	243.9	272.3	299.8	(10.1)

주: 1) 일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 연계결제 포함
 2) 금융결제원 운영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가 한은금융망에서 차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액
 3)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2. 조직 및 지배구조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6개 부서(12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가입, 운영 등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국과 전산정보국은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는 동 업무에 관해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감사하고 있다.

3. 법적·규제적 체계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 절차를 제정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청산·결제절차는 다른 참가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되고 있다.

4.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제공 서비스)

한은금융망을 통한 일반자금이체는 참가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원화를 이체하는 업무이다. 콜자금 결제는 콜결제시스템을 통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과 이자지급을 한은금융망의 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이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거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증권매매에 따른 증권의 인수도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증권결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증권결제동시결제 업무와,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를 상대국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이체와 동시에 처리하여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외환동시결제업무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은금융망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정산 차액을 지정처리시점에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 간에 이체하는 차액결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기업 등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이체한도(10억원)를 초과하는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실시간으로 결제된다.

(운영 및 결제 절차)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금이체신청 전문의 입력시간은 주중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입력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상거래별 결제방식)

한은금융망의 결제방식은 대상거래에 따라 순수 총액결제방식만이 적용되는 총액결제(RTGS)시스템과 순수 총액결제방식과 상계결제방식(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형(Hybrid)결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의 두 가지 계좌를 보유하며 총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당좌예금을,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결제전용예금을 이용하여 결제한다.

한은금융망의 대상거래 중 외환동시결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와 관련된 자금이체는 총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참가기관간 상호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져 동시처리에 적합한 일반자금이체, 콜자금 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 등과 관련된 자금이체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지급지시 유형)

참가기관들은 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에 지급지시를 입력할 때 이를 ‘신속지급지시’와 ‘보통지급지시’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신속지급지시는 입력시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충분하면 건별총액방식으로 즉시 결제되므로 시급히 지급해야 할 거래나 동시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거래는 신속지급지시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급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의 경우 보통지급지시를 이용하여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다. 보통지급지시는 결제전용예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단독으로 즉시 결제되지 않고 상대방 지급지시와 묶여 양자간 동시처리방식이나 매 30분마다 시행되는 다자간 동시처리방식으로 처리된다.

(수수료)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이용시 한국은행이 정하는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용수수료는 한은금융망의 구축 및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수수료는 월정액 수수료와 건당 수수료로 구분되며 건당 수수료는 이용시간대별로 상이하다. 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16시 이전에 자금이체를 신청한 거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16시 이후 신청한 거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참가기관들의 지급지시 조기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IV. PFMI 원칙별 설명

원칙 1 법적 기반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 운영을 규제하는 법규와 참가기관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대외에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개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도 상충되지 않는 등 법적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음
- 한편, 한은금융망은 한국 외에 관련된 사법권역이 존재하지 않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적 기반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FMI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일중 유동성 제공 관련 담보 및 채무불이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제10호 및 제81조에서는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함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의 권리·의무는 私法上 계약인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도 명시되고 있음
- 한편,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한국 이외의 사법권역은 없음

2.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관련 법규와 정합적인 규정, 절차 및 약정을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 업무규정은 국내 법규 체계에 따르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 정의를 포함하는 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
- 한은법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그 하부 규정은 총재 또는 금융결제국장이 정함

3. FMI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고객에게까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법률, 한국은행 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안내책자인 「한국의 지급결제제도」에서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참가기관협의회나 공문을 통해 참가기관에 안내함

4. FMI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집행 가능한 규정, 절차, 약정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 FMI가 취한 조치는 무효화 또는 뒤바뀌거나 보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확실성이 있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부합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기관의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해당사항 없음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원칙 2 지배구조

FMI는 명확·투명하고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다른 관련된 공익상의 고려사항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어야 함

개괄

- 「한국은행법」은 한은금융망 관련 규정의 목적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통제 중요조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감사실과 국회 및 감사원의 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FMI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금융안정 및 관련 공익상의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목표를 가져야 함

- 「한국은행법」 제81조는 한은금융망 관련 규정의 목적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도 한은금융망 운영의 목표를 명시함
-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금융망 운영시 금융안정 목적을 추구해야함이 보다 명확해짐

2. FMI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무 및 책임 라인을 제공하는 문서화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어야 함. 이러한 체제는 소유자, 관계당국, 참가자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 한은금융망 관련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구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등은 「한국은행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함
-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의 운영관리 및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유지 및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은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3. FMI 이사회(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구성원 이해상충을 식별, 대처,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그 기능에 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함. 이사회는 이사회 전체의 성과와 개별 이사회 구성원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한국은행법」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은금융망 운영 외에 물가안정, 금융시장안정 등 공정책 목적과 책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운영 FMI에서 우려되는 이해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정기적 성과평가는 한국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

4. 이사회는 복수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능력 및 유인을 갖춘 적합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함. 이사회는 통상 비상임 이사를 포함할 것이 요구됨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됨

5.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는 명확히 정해져야 함. FMI의 경영진은 FMI의 운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그들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경험, 능력의 조합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함

- 「한국은행법」과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경영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
- 한국은행의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함한 한은의 정책 목적 및 책무수행을 위해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함

6. 이사회는 FMI의 리스크 허용 방침을 포함하고, 리스크 의사결정에 대한 책무와 책임을 할당하며, 위기 및 비상시의 의사결정을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배구조 체계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이 충분한 권한, 독립성, 자원 그리고 이사회에의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함

- 주요 리스크 통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통제 중요조치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리스크 관리현황 등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운영과 감시업무간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한은금융망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의 감사실과 외부기관인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도 수감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7. 이사회는 FMI의 설계, 규정, 전략 전반 및 주요 의사결정이 직·간접 참가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함.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함

- 참가기관의 의견반영 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서는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참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급결제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변경시 동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함

원칙 3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FMI는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개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동 FMI 내에서 발생하거나 동 FMI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의 범위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방침,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리스크관리 체계는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음
- 주요 리스크 통제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자금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
- 비상상황에는 사전에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지속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정함
- 한은금융망 리스크 관리현황 및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감사실, 외부기관인 국회와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2. FMI는 참가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객들이 FMI에 초래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억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결제상황 정보를 참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참가기관은 대기취소 및 대기순위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처리하여 결제상황을 관리하고 있음
- 차액결제지연, 긴급상황 통보 지연 등 리스크 유발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완화 및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절감효과 제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차등부과함

3. FMI는 다른 주체(여타 FMI, 결제은행, 유동성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등)로 인해 부담하는 중대한 리스크와 반대로 FMI가 그들에게 초래하는 중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동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개발해야 함

- 한은금융망의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면 여타 FMI 및 참가기관에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여타 FMI에서의 결제 지연, 운영상 장애 등이 발생하면 한은금융망에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한은금융망 운영담당 조직에서 자금이체의 대기현황 등 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한은금융망 감시 담당 조직에서는 한은금융망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별도의 한은금융망 이용약관서에서 이용기관(여타 FMI)의 한은금융망 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규정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의 업무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4. FMI는 계속기업으로서의 핵심 업무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식별해야 하며, 복구 또는 질서있는 업무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함. FMI는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복구 또는 질서있는 업무축소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가능하다면 FMI는 정리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해야 함

- 한은금융망 장애 또는 재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은금융망 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및 복구, 복원 처리절차를 업무지속계획(BCP)에 마련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은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발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기업으로서의 핵심업무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음

원칙 4 신용리스크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FMI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로 인해 일부 잠재적 신용리스크는 발생 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높은 신용도 및 유동성을 갖춘 담보증권의 납입, 보수적인 헤어컷제도 등의 리스크 관리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동 체계는 정기적인 내부 및 외부 감사대상이 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신용 익스포저는 현재 익스포저,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 또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총액결제시스템 구조상 결제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나 참가기관의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신용리스크에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함
- 대상기관의 일중유동성 상환 실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내부 및 외부의 감사대상이 됨

2. FMI는 신용리스크의 원천을 식별하고 신용 익스포저를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이용해야 함

(일중RP)

- 일중RP 제공에 따른 일중 익스포저 규모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며 당일 17시 15분까지 상환완료토록 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기관 선정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RP거래시 신용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안채 등을 담보로 납입하게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적용하여 일중 채권가격의 급변동에 대비하고 있음
- 지원한도는 대상기관의 자기자본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

(일중당좌대출)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들의 일중당좌대출 규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출신청규모도 담보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채, 통안채 등 신용리스크가 낮은 증권을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보수적인 헤어컷 비율을 적용하며 담보평가액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함

3. 자금결제시스템 또는 증권결제시스템(SSS)은 담보 및 이와 동등한 다른 재무자원을 사용하여 개별 참가자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미래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참가기관이 야기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
- 다만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운영하는 일중 유동성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고신용·고유동성의 국채, 통안채 등으로 담보를 제한하고 보수적인 헤어컷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및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를 커버하고 있음

4. ~ 6 해당사항 없음 (중앙청산소(CCP)에 적용되는 원칙임)

7. FMI는 참가자의 FMI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참가자간의 개별적 또는 결합된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신용손실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절차를 확립해야 함. 이러한 FMI의 규정과 절차는 유동성 공급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황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커버되지 않는 신용손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함. 또한 이 규정 및 절차에는 FMI가 안전하고 건실하게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기간중에 채택될 수 있는 재무자원 보충과정이 명시되어야 함

- 일중 유동성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참가기관이 상환에 실패한 경우 담보를 처분하여 손실을 완전히 커버하고 있음
- 보수적인 헤어컷이 적용되는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담보로 모든 손실을 커버하고 있어 별도의 재무자원 확보방안은 불필요함

원칙 5

담보

FMI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함. 또한 FMI는 헤어컷 및 집중한도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함

개괄

- 담보대상 증권이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 리스크가 낮은 증권으로 제한되고 엄격한 헤어컷이 적용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일반적으로 FMI는 담보로 (통상) 수용하는 자산을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한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는 시스템 구조상 별도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일중 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구하고 있음
- 일중당좌대출시 담보증권으로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 리스크가 낮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발행) 등을 징구하고 있음
- 일중RP거래 대상증권도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제한함

2. FMI는 신중한 평가관행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시장 스트레스상황을 고려하는 헤어컷을 개발해야 함

- 시장가격에 따라 매 영업일 담보증권의 인정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 담보증권의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 및 잔존만기별로 보수적인 차등 헤어컷을 적용하고 있음

3. FMI는 경기순응적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하고 신중한 범위 내에서 시장 스트레스 기간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헤어컷을 설정해야 함

- 담보증권의 종류에 따른 리스크와 스트레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헤어컷 비율을 충분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4. FMI는 상당히 불리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자산을 담보로 집중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함

- 적격담보를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시장리스크가 낮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큰 폭의 가격 저하 없이 해당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 가능하여 담보 집중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적음

5. 해당사항 없음 (국가간 담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6. FMI는 잘 설계되고 운영상 유연성이 있는 담보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일중RP거래, 일중당좌대출을 위한 담보의 질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 기관임

원칙 6 증거금

CCP는 리스크에 기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 실효성 있는 증거금 제도를 통해, 모든 상품에 관하여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커버해야 함

개 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원칙 7 유동성리스크

FMI는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하며,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도 높은 신뢰수준으로 지급채무를 당일, 필요에 따라서는 일중 또는 여러 일에 걸쳐 결제할 수 있을 만큼 관련된 모든 통화에 대해 충분한 유동자원을 유지하여야 함

개 괄

-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결제를 보증하지 않으며,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을 채택하여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
- 한국은행은 결제자금 절약을 위한 동시처리를 지원하고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 결제은행, 결제대행은행, 보관은행, 유동성 공급자 및 기타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견고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RTGS 방식을 채택하여 지급지시를 한 지급참가자의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동 지급지시를 대기시키거나 취소할 뿐 한국은행이 참가기관의 결제를 보증하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음
- 또한, 한은금융망은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성 절약형 RTGS를 채택하고 참가기관에게 일중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2. FMI는 일중유동성 사용을 포함하여 결제 및 자금조달 흐름을 지속적으로 적시에 식별, 측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및 분석 수단을 보유해야 함

- 운영담당 조직에서 자금이체의 대기현황 등 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시간 대기 기관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감시담당 조직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참가기관에 실시간으로 결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참가기관의 리스크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3~10. 해당사항 없음 (발권기관인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칙 8 결제완결성

FMI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한 최종 결제를 제공해야 함. FMI는 필요하거나 소망스러운 경우에 최종 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을 통한 모든 거래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내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지급지시 취소불가능시점, 결제완료시점이 한국은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한은금융망 운영 관련 조치는 당해 기관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취소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제의 완결성을 확보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의 규정과 절차들은 결제가 완결되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금이체 관련 신청전문을 수신한 때에 이를 즉시 처리하며, 신청전문이 처리되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과 관련된 이체지시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기관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의 취소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제의 완결성이 확보되어 있음

2. FMI는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결제일 종료시점 이전에, 가급적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최종 결제를 완료해야 함. 거액결제시스템(LVPS) 또는 증권결제시스템(SSS)은 결제일중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 또는 복수의 일괄처리 방식의 채택을 고려해야 함

- 한은금융망을 통한 모든 거래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내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지시 취소불가능시점 및 결제완료시점은 한국은행 규정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3. FMI는 미결제 지급, 이체 지시 또는 그 외의 채무가 참가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자금이체신청 전문은 한국은행에 정당하게 수신된 때 승낙된 것으로 보아 취소가 불가능함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에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유동성 절감목적,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않고 대기되고 있는 지급지시는 입력마감시점 전까지는 취소 가능하며 동 시점까지 결제되지 않은 지급지시는 한국은행이 일괄 취소함

원칙 9 자금 결제

FMI는 실행 및 이용 가능한 경우 중앙은행 통화로 자금결제를 실행해야 함. 중앙은행 통화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 FMI는 상업은행 통화의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개 괄

- 한은금융망은 중앙은행이 운영기관인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중앙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최종 결제를 수행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실행 및 이용가능한 경우 중앙은행 통화로 자금결제를 실행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기관인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중앙은행 통화로 결제하고 있음

2~4. 해당사항 없음 (중앙은행 통화로 최종 결제됨)

5. FMI와 결제은행간의 법적 합의에는 FMI와 참가자가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 결제은행 장부에서 이체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이체가 실행될 때 완결된다는 것, 그리고 수취 자금은 가능한 영업일 마감시점까지(이상적으로는 일중에) 이체가 능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한은금융망을 통한 모든 거래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급지시 취소불가능시점 및 결제완료시점은 한국은행 규정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원칙 10 실물 인도

FMI는 실물 금융자산 또는 상품의 인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실물 인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함

개 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원칙 11 중앙예탁기관

CSD는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CSD는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함

개 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FMI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를 들어, 증권 또는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한 채무의 최종 결제를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의 조건부로 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인 FMI는 해당 FMI의 결제가 총액 또는 차액기준인지, 또는 언제 결제 완결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 채무의 결제가 연계된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함

-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련 자금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및 외환대금동시결제(PVP) 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어 원금리스크가 제거됨

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FMI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함. 동 규정과 절차는 FMI가 손실 및 유동성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개괄

-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공급하는 일중 유동성 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담보 처분방법 등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제도 개선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내용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자신의 채무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으로 총액결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결제와 관련하여 이행 책임이 없음
- 다만 결제 지연 및 교착현상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일중 유동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유동성 이용기관이 상환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 가능함
- 채무불이행시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2. FMI는 상기 규정 및 절차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절차가 한국은행 규정과 관련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3. FMI는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의 주요 사항을 공개해야 함

- 일중유동성 상환실패에 따른 규정 및 처리절차와 관련 약정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4. 채무불이행 처리 절차에 대한 검증 및 검토는 최소한 매년, 또는 규정과 절차상의 중요한 변화 발생시 실시해야 하며, 동 검증 및 검토에는 참가자와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관련 규정 개정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해 참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일 전에 개정 내용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원칙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

CCP는 참가자 고객의 포지션 및 그 포지션과 관련하여 CCP에 제공되는 담보의 분리 관리와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개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원칙 15 일반사업리스크

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사업체로서 운영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일반사업 손실을 커버하는데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유동적인 순자산을 보유해야 함. 더욱이 유동적인 순자산은 중요한 업무와 서비스의 복구 또는 질서있는 업무축소를 보장하는데 항상 충분하여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은 발권력을 보유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이 소유·운영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운영비용은 한국은행 예산 및 회계 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보고되며 외부 감사도 받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사업전략의 서투른 집행, 부의 현금흐름 또는 예상치 못한 과도한 영업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한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운영비용은 한국은행 예산 및 회계 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통위의 심의·의결 및 보고되고 있음
- 또한 감사실,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다,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음

2~5. 해당사항 없음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칙 16 보관 및 투자 리스크

FMI는 그 고유의 자산과 참가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자산이 손실되거나 그 자산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함. FMI의 투자는 최소한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를 지닌 금융수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개괄

담보증권의 질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엄격히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기관이어서 충분한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자체 자산과 참가자들의 자산을 감독·규제를 받는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동 기관은 그 자산을 충분히 보호하는 확고한 회계관행, 보호절차 및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한국은행은 일중유동성(일중당좌대출, 일중RP) 제공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참가기관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고 있으며 담보증권의 질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이루어짐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담보를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엄격히 관리·감독받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기관임

2. FMI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산과 참가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중인 담보증권에 대하여 필요시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담보관리 시스템(safe*)을 통해 실시간으로 담보내역을 조회하고 담보를 즉시 처분할 수 있음

3-4. 해당사항 없음 (한은금융망에는 적용되지 않음)

원칙 17 운영리스크

FMI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이용해 그 영향을 경감해야 함. 시스템은 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확장가능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업무지속계획은 대규모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시를 포함하여 운영의 적시 복구 및 CCP의 채무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 운영을 포함한 전행적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합적 리스크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 각 위험요소를 기술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 및 통제수단 등을 명시하는 한편 업무별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은 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운영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갖춘 견고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함

- 한은금융망 운영을 포함한 전행적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업무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 운영리스크 위험요소를 기술하고 운영리스크 각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 및 통제수단 등을 명시하고 있음

2. 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 절차 및 통제수단 등은 정기적으로 평가, 감사 및 검증되어야 함

-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제81조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 한은금융망 관련 운영리스크 통제 중요조치를 결정하고 있음
- 「전산정보규정」은 내부통제 및 감사 등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총재보 등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한국은행의 감사부서인 감사실에서도 한은금융망 운영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국회와 감사원도 한은금융망 운영을 포함한 한국은행 전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3. FMI는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운영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이며 세부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는 「IT서비스관리지침」 및 「IT서비스관리계획」에 명시됨

4. FMI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증가된 거래를 적절히 처리하고 서비스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장 가능한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 한은금융망 일평균 시스템 사용률과 집중시간대 사용률 등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스템 운영은 가용성관리지침, 용량관리지침, 장애관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상황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되고 있음

5. FMI는 모든 잠재적 취약성 및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적 보안 및 정보보호 방침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 건물, 설비,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설비와 전산설비 안전대책, 화재방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기별 내부감사를 통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보호세칙」 등 관련 방침 및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보안상 위협 및 취약성 진단인 IT취약점 진단평가를 받고 있음

6. FMI는 중대한 운영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업무처리 센터의 이용, IT시스템의 장애발생 후 2시간 이내 운영재개 등을 포함하는 업무지속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장애발생 일 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장애 및 재해 발생으로 인한 한은금융망 업무중단의 위험을 예방하고, 장애 및 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운영
-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예방 영역과 비상상황별로 수립하는 비상대응·복구계획 영역으로 구분됨
- 비상상황시 주요 의사결정 및 비상대응·업무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참가기관 행동지침,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재해발생으로 본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본부와 1차 대체근무장소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2차 대체근무장소를 지정, 운영함

7. 중요 참가자, 다른 FMI, 서비스 및 유틸리티 제공자가 FMI 운영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 한은금융망과 연계된 다른 FMI 및 중요 참가기관과의 운영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운영기관협의회 또는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매년 BCP 모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원칙 18 접근 및 참가요건

FMI는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공표된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개괄

-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한은금융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직접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간접참가자 그리고 다른 FMI에 대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련 참가요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참가기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 참가기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최소 예상이용건수·전담인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2. FMI의 참가요건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며, FMI의 개별 리스크에 부합하게 설정, 공표되어야 함. 수용가능한 리스크 통제기준을 유지하면서 FMI는 허용가능한 접근을 제한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한은금융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은금융망 참가를 허용하고 있음
- 한은금융망 참가기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한국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3. FMI는 참가요건의 준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또한 참가요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에 대해 참가 정지 및 질서있는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표해야 함

-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충족여부를 매년 재심사하고 있음
- 가입기준 충족여부 재심사 결과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 충족방안의 준수 요구,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및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또한, 영업정지 등으로 참가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개괄

-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이용거래는 구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계층적 참가제도가 FMI에 야기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FMI는 자체 규정, 절차 및 합의가 간접참가제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 참가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은 직접참가기관을 통하여 한은금융망에 간접참가할 수 있음
- 간접참가기관은 기본사항이 기재된 한은금융망 이용신청서를 한국은행앞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허용
- 간접참가기관은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고, 직접참가기관은 간접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범위내에서만 지급지시를 대행하고 있음

2. FMI는 동 FM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및 간접참가자간의 중요 의존관계를 식별해야 함

- 간접참가 이용신청서를 통해 직접참가기관과 간접참가기관과의 관계 파악이 가능함
- 또한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거래는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3. FMI는 간접참가자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 FMI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참가자와, FMI의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참가자의 처리능력에 비해 거래 건수 및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참가자를 식별해야 함

- 개별 간접참가기관의 직접참가기관을 통한 한은금융망 이용거래를 건별로 식별이 가능함
- 간접참가기관의 업무참가범위 및 결제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한은금융망 전체 및 직접 참가기관의 결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4. FMI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한국은행은 간접참가기관의 결제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원칙 20 FMI 연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FMI와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FMI는 동 연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함

개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원칙 21 효율성과 실효성

FMI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함

개괄

- 한은금융망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 및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특히 청산·결제 제도의 선택, 운영 구조, 청산·결제·기록되는 상품의 범위, 기술 및 절차의 이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한국은행은 시스템의 구조, 처리절차 등의 측면에서 한은금융망 효율성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참가기관협의회, 관련기관 간담회,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참가기관과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이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2. FMI는 최소 서비스 수준, 리스크 관리의 기대수준, 업무 우선순위의 영역 등에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함

-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결제절차상의 달성 목표(처리시점, 리스크관리절차, 업무처리순서 등)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도 한은금융망은 「IT서비스관리지침」 등에 따라 측정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3. FMI는 자신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함

- 규정된 결제절차 준수여부는 일중 상시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보고서(지급결제보고서 등)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평가되고 있음
- 또한 국제기준에 의거 한은금융망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효율성 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

FMI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함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함

- 참가기관과의 주요 통신절차는 인터넷 표준인 TCP/IP를 이용하고 있음
- 국제거래(예: CLS은행 연계 거래)의 경우 SWIFT를 이용함

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

FMI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FMI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함

개 괄

- 한국은행 「규정」 및 그 하위 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참가기관의 한은 금융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 설명책자 등을 참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1. FMI는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채용해야 함.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또한 공표되어야 함

-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업무처리절차 등 한은금융망의 기본구조 및 운영방식 등을 「지급결제 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비상시에 대비하여 운영시간 연장, 참가기관의 장애발생시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참가기관용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여 참가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2. FMI는 참가자들이 FMI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FMI와 참가자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명료한 설명을 공개해야 함

- 동 「규정」 등에는 참가기관의 권리·의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변경권한, 리스크 관리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 등은 참가기관에 제공되는 매뉴얼 및 해설책자 등에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3. FMI는 참가자가 FMI의 규정 및 절차, 참가자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문서와 연수를 제공해야 함

-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 설명책자 등을 참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참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대면점검시에도 참가기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핵심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 또한 수시로 참가기관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은금융망 시스템 재구축과 같은 중요사안의 경우 전체 참가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4. FMI는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수준에서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할인에 관한 방침을 공표해야 함. FMI는 비교할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지급결제제도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사전예고제에 따라 한은금융망 수수료 결정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기관협의회'를 통해서도 수수료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된 수수료정책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수수료 조정에 앞서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수준 및 체제 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결과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음

5. FMI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CPSS-IOSCO 공개체계에 대한 답변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해야 함. 또한 FMI는 최소한 거래량과 거래액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 규정, 업무처리절차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개되며, 한은금융망 평가 내용도 정기보고서(지급결제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공개되고 있음
- 국제기준에서 제시한 공개체계에 따라 본 공개서를 작성, 공표함
- 월별 처리건수 및 금액 등 한은금융망 관련 통계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데이터 공개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개 괄

- 해당사항 없음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적용되지 않음)

V. 참고자료

□ 관련 법규

- 「한국은행법」
(www.law.go.kr/법령/한국은행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www.law.go.kr/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절차
(law.bok.or.kr> 금융안정> 지급결제)

□ 참고자료 목록

-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610)
- 지급결제보고서(매년)
(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107)
- 지급결제제도 조사연구자료
(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110)

- 한은금융망 관련 통계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의 “주제별> 5. 지급결제> 5.2 한은금융망”에 수록